

자료상 근절방안 연구 : 납세자카드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서정화*

〈요 약〉

국가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음식업등 현금수입업종과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는 건설업, 제조업 등 대다수의 사업자는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꺼려 부가가치세를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상으로 부터 위장·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다.

국세청의 현재까지 자료상 관리는 사후관리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자료상 입장에서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소멸될 즈음 이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자료상은 찾아내기도 힘들고 찾아낸다 하더라도 실행위자를 찾아내어 근절 시키기가 어려워 실익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다.

사실 자료상은 매출자료의 소화와, 매입자료의 수취가 어려운 업종이나 또는 업종 특성상 매출이 노출된다해도 가공원가를 계상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를 발행하며, 부정환급, 부정공제 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자료상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국세청에서 자료상을 조기에 찾아내지 못하고 자료상 행위 발생 이후 2-3년이 지난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그 기간중 자료상 행위자는 무능력자의 명의위장으로 자료상 행위를 한 후 무단으로 폐업하고 잠적을 감추는 등 실질적인 자료상 행위자는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납세자카드 발급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연계하면 자료상을 근절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용사회로 접어들면서 국민들의 카드의 이용은 보편화 되고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납세자카드를 발급받고, 납세자는 거래내역을 세금계산서 대신 인터넷 PC를 이용한 카드리더기를 통해 납세자 카드에 의해 처리 할 경우에는 거래내역이 국세청 전산망에 실시간으로 넘어오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납세자는 관할 관청에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고, 국세청에서는 오류 및 누락자료가 현저히 줄어 자료상 혐의자를 조기에 색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다.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BK21 연구교수, suzukiyu81@yonsei.ac.kr, 주저자

논문접수일 2023년 11월 14일 게재확정일 2023년 12월 5일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카드제도의 도입을 통한 자료상 근절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사실 자료상행위는 세무행정의 발전을 크게 저해시키는 가장 큰 암적인 요인이므로 반드시 그 근절방안을 계속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자료상, 세금계산서, 납세자카드, 위장·가공거래, 가공원가

I. 서 론

국가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음식업등 현금수입업종과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는 건설업, 제조업 등 대다수의 사업자는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꺼려 부가가치세를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상으로 부터 위장·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다.

국세청의 현재까지 자료상 관리는 사후관리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자료상 입장에 서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소멸될 즈음 이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자료상은 찾아내기도 힘들고 찾아낸다 하더라도 실행위자를 찾아내어 근절 시키기가 어려워 실익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다.

현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주고받는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자유롭게 발행하므로 자료상이 세금계산서를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일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일반 납세자들의 납세의식 수준 및 세법 지식의 부족으로 자료상이 발급한 위장·가공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국세청의 적극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뿐만 아니라, 이를 수취하는 납세자 역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자료상에게는 세무조사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가하고, 이를 수취한 납세자에게는 누락분 관련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과 및 가산세 부과로 대부분 종결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이유로 아직도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구매하려는 납세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자료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왔으며 이에 따라 자료상 행위자는 어느 정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자료상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자료상과는 ‘거래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납세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동시에 자료상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자료상에게 자료를 수취하는 사업자에게도 상당한 불이익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우리 경제사회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자료상을 근절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 바 본 연구는 이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II. 자료상에 대한 일반론

1. 자료상의 개념

가. 자료상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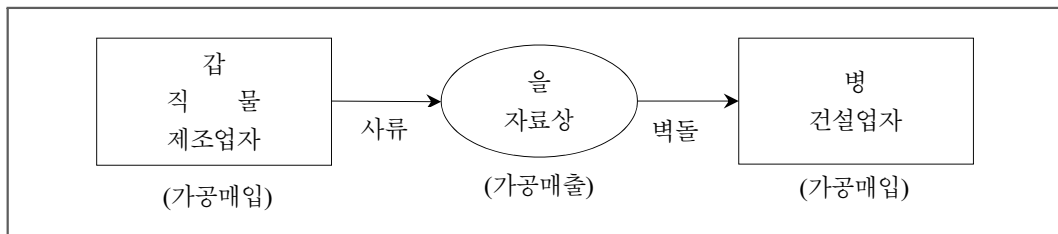
자료상이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 중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¹⁾ 및 자료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를 말한다.

즉, ‘자료상’이란 실제로는 사업을 앓는 자가 관할 세무서에 등록을 하고서 수수료 취득을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그림 1>과 같은 경우이다.

이와 같은 자료상을 통한 거래는 직물제조업자 갑의 위장매출액의 자료소화와 건설업자 병의 위장매입액의 매입자료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그림 1>은 부정환급이나 가공원가 계상을 목적으로 하는 가공거래이다. 자료상 을은 직물 제조업자 갑과 건설업자 병이 부정환급이나 가공원가계상을 목적으로 실물거래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형태이다.

<그림 1> 사례



나. 자료상 판정기준

자료상 판정기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료상으로 판정한다.²⁾

-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이하 ‘가공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전액 발급한 자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국세청, 2004년 부가가치세 조사관리 지침(2004. 5월)

- ②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 총 발급금액 대비 가공세금계산서 발급금액 비율이 50% 이상인 자
- ③ 가공세금계산서 발급금액 비율이 50% 미만이라도 1과세기간중 가공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이 5억원이상인 자
- 이 때 발급금액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통산하여 계산한다.

한편 자료상 혐의자로 선정을 하려면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자료상 혐의자 선정 기준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자료상 혐의자의 선정기준

선정기준	상세 내역
1. 자료상과 거래자	- 당기 매출과세표준 5억 원 이상자로서 • 당기에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와 4개 과세기간 거래금액이 3천만원 (법인 5천만원) 이상인 자
2. 자료상과 관련된 자	- 자료상으로 확정된 법인의 주주·임원 또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의 친인척이 경영하는 업체로서 • 당기 신고매출액에 매출 불부합 금액을 합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세금계산서 불부합금액 과다자	- 당기 신고매출액에 매출 불부합을 더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자로서 • 불부합 금액이 세금계산서 수수총액 대비 30%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인 자(원단위 입력 오류분은 제외)
4. 폐업후 및 폐업자와 거래자	- 폐업이후 불부합 금액 5천만원 이상 발생자 및 폐업자와의 거래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거나 매출액의 30% 이상인 자
5. 단기폐업 대사업자	- 개업일로 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사업자로서 • 총 신고매출 과세표준이 5억원(법인 10억원) 이상인 자
6. 부가울 저조자	- 당기 매출 10억원(법인 30억원) 이상으로서 • 신고기준 순부가율이 전국평균 대비 30% 미만자 중 4개 과세기간 누적부가율이 전국 평균을 대비 50% 미만인 자(신규사업자 및 총괄납부자는 제외)
7. 부가울과다 무·과소납부자	- 당기 신고매출액에 매출 불부합(매출과소)을 더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로서 • 부가율이 전국 평균 대비 200% 이상으로서 무납부자 또는 과소납부자(납부한 금액이 납부할 금액의 30% 이하이면서 과소 납부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자)
8. 매출액 급변동자	- 직전기 매출 10억원(법인 20억원) 이상자로서 • 신고매출액에 매출 불부합 금액을 더한 금액이 직전 대비 300% 이상 신장된 자 또는 10% 이하로 감소한 자
9. 집단상가내 집중거래자	- 매출 10억원 이상자로서 • 동일상가(집단상가) 사업자와 거래금액 5억원 이상인 자

자료 : 국세청, 자료상 연계분석 업무 지침(2004.03)

다. 자료상 관련 세법규정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³⁾

고의 미발급, 거짓기재 발급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 이하 같다)를 발급해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 이하 같다)를 발급해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통정 등에 의한 행위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발급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자료상 등 :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자료상 등의 알선 중개 : 위 ‘다)’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

한편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위 ‘다)’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3)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위반 등

때에는 해당 ‘라)’의 1/2를 가중한다.

〈표 2〉 범칙유형에 따른 범칙규정 요약

범칙 규정	범 칙 유 형			
	가) 고의 미발급, 거짓발급	나) 통정 등에 의한 행위	다) 자료상 등	라) 자료상 등의 알선·중개
처벌 내용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VAT의 2배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VAT의 2배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VAT의 3배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VAT의 3배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법 제22조)	7년	7년	7년	7년
기수시기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때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하는 때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하는 때

(2) 벌금 등의 통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대신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⁴⁾.

그러나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고를 받은 자가 그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⁵⁾.

(3) 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 받은 세액을 상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⁶⁾.

4)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참조

5)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제1항 참조

6) 「조세범처벌법」 제16조 참조

2. 자료상의 발생원인 및 특성

가. 자료상의 발생원인

자료상 행위에서 자료상행위자는 일정액의 수수료가 생기고, 자료수요자는 수취한 매출 또는 매입자료를 통해 가공원가의 계상 내지는 분식회계를 조장하여 소득의 조정을 꾀하는 바, 구체적으로 유통과정측면과 세무행정의 세적관리측면으로 나누어 자료상의 발생원인을 살펴본다.

(1) 유통과정측면

(가) 매입 또는 매출자료의 수수료가 곤란한 업종에서의 수요 발생

매출액 노출을 기피하는 소규모 제조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무자료로 매입하는 섬유류, 합성수지류 업종과 미등록 소규모 고물상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는 고철, 파지 등의 도매업자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또한 대기업 제품의 도매업자가 중간도매업자의 수취기피로 인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는 수입물품, 피복, 건축자재, 석유류 등이 무자료로 판매되고 있다.

(나) 가공원가의 구성

상 관례상 비정상 자금이 소요되는 업종인 건설업, 각종 납품업 등에서 가공원가를 계산할 목적으로 자료상 거래가 이루어지며, 위장·가공 세금계산서(계산서)가 필요한 업종인 제조업, 도매업 등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2) 세적관리측면

(가) 사업자등록증 지급시 사전조사 소홀

사업자등록증 발급절차 간소화 즉, 민원봉사실에서의 즉시 발급과 지역담당제도 폐지 등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국세청 행정이 납세서비스 행정으로 전환됨으로써 사업자 세적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나) 사업자등록증발급 후, 사후 관리의 관계

현재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자료상 행위를 병행하는 사업자들이 상존하며, 국세청의 지역담당제도의 폐지로 말미암아 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영업 동태확인이 사실상 곤란한 실정이고, 세무공무원의 업무과다로 인해 자료상의 색출업무가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 미등록자, 위장사업자 상존과 자료상에 대한 처벌규정의 비현실성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주변상인 및 시장상인들 중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미등록사업자와 위장사업자가 상존하는 실정이며, 현재의 자료상에 대한 처벌규정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현실적인 현황이다.

나. 자료상의 특성

자료상은 매출자료의 소화와, 매입자료의 수취가 어려운 업종이나 또는 업종 특성상 매출이 노출된다해도 가공원가를 계상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를 발행하며, 부정환급, 부정공제 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자료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⁷⁾

(1) 사전 적발이 어렵고, 단기간에 이동

자료상 행위는 자료상과 거래 상대방과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어 적발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외관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와 동일하게 각종 증빙서류 등을 처리하고 있어 자료상 거래 후 세무신고 내용을 과세관청이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자료상은 사업자등록 이후 단기간 동안에 다수 거래처에 허위·위장·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폐업·도주해 버려, 일정기간 경과 후에 매입·매출거래처에 대한 세무추적조사를 통해서만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그들의 색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2) 주로 기경험자가 영위하며, 대부분 무재산·무능력자 등 명의로 사업자등록

주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을 이해하고 가공매출·가공매입을 경험한 자가 다시 영위하며, 만약 자료상으로 검찰고발을 받게 되면 즉시 폐업처리 하고 다시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자 명의로 신규 사업자등록하여 또다시 자료상을 영위한다.

한편 자료상은 과세당국의 감시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일부는 성실납세자인척 처신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체납 후 결손처분을 받고, 아주 적은 세액만을 납부하는 경향이 있다.

(3) 사무실 사업자가 많고, 금융자료 등 증거 자료를 조작

자료상은 업종에 맞지 않는 층수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제조업체가 제조시설이 없다거나 종업원수가 여러명 필요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종업원이 극소수인 경우가 많다. 또한, 동일한 사업장에 여러 개의 사업자 등록을 동시에 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자료상은 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인터넷 뱅킹등으로 발행금액을 입금(入金)시킨 후 다시 현금으로 회수(回收)하거나 사후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실물거래임을 입증시킬 목적으로 운송장을 수취하거나 운송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치밀하게 증거서류를 조작한다.

(4) 매출액이 급변동 하거나 원·근거리 사업자와 집중적인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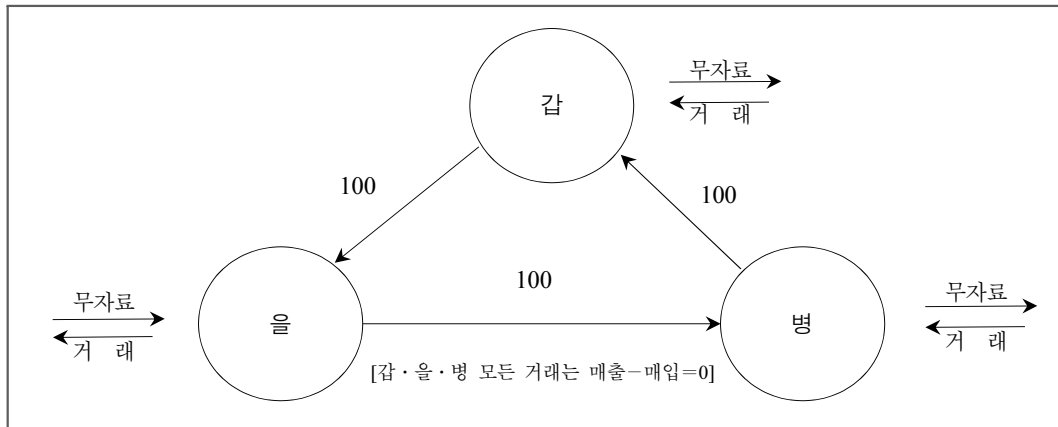
매출액이 급변동하는 자는 일단 의심의 대상이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업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매출액의 급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가공자료 발생을 의심하고 그

7) 아래 자료상의 특성은 송쌍중,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에서의 자료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2차 한일/일한 세무 Workshop 자료집, 2006, pp.314~315의 자료를 정리하고, 최근 신종 자료상의 특성을 추가하였다.

거래 상대방을 분석해 보면 혐의점을 파악해 낼 수 있다.

한편 자료상은 남대문시장등 동일상가 또는 집단상가 내의 사업자와의 지속적인 거래, 속칭 갑·을 양자간 또는 갑·을·병 3자간 뽕뽕이 거래⁸⁾ 즉, <그림 2>와 같은 거래를 행하여 정상 사업자처럼 위장한다.

<그림 2> 상호 가공거래



(5) 부가가치율이 전국평균율과 차이가 크며, 사업과 무관한 업종과의 많은 거래

부가가치율이 전국 평균부가가치율보다 높은 경우는 자료상 혐의가 있으며, 부가가치율이 전국 평균부가가치율 보다 낮은 경우는 자료상 등과 거래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업종이나 면세사업자 등과의 거래가 많다.

(6) 사업규모에 비하여 원천갑근세를 소액 납부하며, 사업자등록 후 별다른 사유 없이 무신고

자료상은 직원이 없거나 1~2명 이내의 위장업체이므로, 매출규모에 비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이 적거나 또는 없더라도 정상 사업체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소액의 원천갑종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기도 한다.

(7) 자료상 행위의 지능화·광역화

최근에는 자료상 행위가 인터넷 카페 이용이나 텔레마케터를 통한 전국 조직으로 분업화·광역화의 추세이며, 기존의 자료상 유형에 비하여 기동성이 높아지고 은밀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8) 기업상호간에 가공거래를 하는 경우로 갑·을·병 3인이 무자료 거래의 자료조달과 일정수준의 과세표준을 유지할 목적으로 서로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거래하는 경우이다.

있어 자료상 색출이 매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3. 자료상 관련 통계

가. 연도별 자료상 조사 현황⁹⁾

연도별 자료상 조사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에 의하면 조사인원이 2016년까지는 점차적으로 줄어 오다가 다시 증가추세이며, 고발인원도 매년 1천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에 비해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3> 연도별 자료상 조사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조사인원	고발인원	조사인원	고발인원	조사인원	고발인원
2013년	1,768	1,332	778	592	990	740
2014년	1,575	1,188	711	545	864	643
2015년	1,553	1,165	691	513	862	652
2016년	1,404	1,031	708	519	696	512
2017년	1,465	1,006	767	533	698	473
2018년	1,584	1,078	873	576	711	502
2019년	1,673	1,213	849	609	824	604
2020년	1,522	1,065	835	577	687	488
2021년	1,537	1,127	904	660	633	467

주1)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22, p.508.

나. 2021년 지방국세청별 자료상 조사 현황

다음의 <표 4>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자료상 조사인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제일 많으며, 서울청과 수도권인 중부청과 인천청의 비중이 절대적 수치를 알 수 있다.

9)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22.

〈표 4〉 2021년 지방국세청별 자료상 조사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조사인원	고발인원	조사인원	고발인원	조사인원	고발인원
서울청	404	277	288	206	116	71
중부청	342	257	220	159	122	98
인천청	221	175	136	106	85	69
대전청	123	94	60	42	63	52
광주청	119	80	58	42	61	38
대구청	130	92	63	44	67	48
부산청	198	152	79	61	119	91
계	1,537	1,127	904	660	633	467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2, pp.508~509.

다. 9개 자료상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지난 2019년 10월 다수의 세금계산서 부실거래 혐의자와 수취자가 연결된 9개 조직, 총 59명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동시조사에 착수하였다. 세무조사를 받은 9개 자료상을 업태별로 구분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자료상을 비중으로 보면 인력공급업이 제일 높고(27.1%), 이어 여행업(23.7%), 조명장치(18.6%), 영상장비(13.6%) 순서임을 알 수 있다.

〈표 5〉 세무조사를 받은 9개 자료상의 업태별 구분

(단위 : 개, 명, %)

구분	합계	인력공급업	여행업	조명장치	영상장비	임가공	고·비철
조직(개)	9	2	3	1	1	1	1
대상(명)	59	16	14	11	8	5	5
비중(%)	100.0	27.1	23.7	18.6	13.6	8.5	8.5

자료 : 국세청, 2019년 10월 보도자료

Ⅲ. 자료상의 유형 및 구체적 사례

1. 자료상의 유형

자료상의 대표적 유형은 다음과 같다.¹⁰⁾

가. 범죄형 전문 자료상

처음부터 자료상의 의도를 가지고 주로 휴면법인 등 사업능력 없는 자들이 명의사업자를 내세워서 단기간 내에 고액의 가짜세금계산서 발행한 후 잠적하는 형태로 이들은 주로 사채업자 등과 연계되어 있거나 단기간 동안 전문 딜러를 고용하는 등 상당히 전국적이며 조직적이다.

나. 비자발적 자료상

(1) 부도 자료상

정상적으로 영업하다가 부도로 인하여 부도시점에가서 다량의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향후에는 범죄형 전문 자료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2) 겸업 자료상

영업은 정상적으로 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부하거나 또는 단골 고정거래처의 요구로 가공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한다.

(3) 금융 자료상

외상매출금의 결제수단이나 은행 대출시 성실한 납세자로 평가 받기 위해 몇 개 거래처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형태이다.

다. 기타 유형

이상의 자료상 외에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거나 일간지신문에 광고를 내고 자료상 행위를 하는 자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에 대한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는 파악이 가능하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은 파악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 이들의 행위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10) 국세청, 지식관리 시스템(2004.09.)

2. 자료상의 구체적 사례

이하에서는 구체적 자료상 행위와 관련한 몇 가지 사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가. 금융기관 대출 목적의 자료상 행위

자료상이 거액의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위장·가공매출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특정법인 끼리 위장·가공매출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출액을 대폭 부풀려 신고하고, 양호한 재무상태인 것으로 허위신고를 행한 증빙서류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큰 금액을 대출받아 미상환 하거나, 발행한 수표를 부도내고 잠적한다.

나. 설립 자료상 행위

당초부터 자료상 행위를 할 목적으로 예를 들면 의류제조업체를 설립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다량 발행하여 거액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위장업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신고누락시키고 위장업체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세무 신고한다.

다. 타인 명의를 도용한 사업자등록 후의 자료상 행위

예컨대, 화물운송업체가 지입차주(持入車主)들을 전국적으로 모집한 후, 지입자동차의 차량원부가 지입회사명의로 되어있는 점을 적극 활용한다. 즉,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차량과의 위·수탁계약서를 위조하고 다시 여러 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행하고, 이들의 명의로 실물거래 없이 거액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라.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하는 자료상 행위

사업자등록번호를 몰래 도용하여 그 번호로 거액의 위장·가공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 역시 별도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다.

또한 무능력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나서 해당 재화의 실제 매출은 실수요자 등에게 소액으로 나누어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매입자료가 필요한 대사업자등에게 발행하고 해당 수수료를 수령한다.

IV. 자료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자료상의 대한 문제점

가. 사업자의 납세의식 부족

(1) 탈세에 대한 범죄의식 부족

사업자들은 자료상으로부터 위장·가공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범죄행위임을 알고 있으나, 이에 대한 특별한 범죄의식이 없고 만약 적발이 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부담하면 된다는 식의 납세의식을 가지고 있다.

(2)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취

최근에 신용카드매출의 양성화로 인하여 자영업자 등의 과세표준이 일반적으로 상승하자 일부 부도덕한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또는 공제)을 받거나 가공원가를 계상할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계산서)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자료상에 대한 사후적 규제조치는 무의미하며 세금으로 연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료상들이 명의자만 계속 바꾸어 가면서 지속적으로 자료상 행위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자료상 행위 등 부정한 세금계산서 수수를 원칙적으로 근절하지 않고는 과세표준양성화 정책에도 한계가 있다고 본다.

나. 납세홍보 부족

사업자가 자료상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계산서)만 수취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발되어 부당공제받은 매입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고 이러한 행위자의 경우에는 통합세무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된다는 사실이 사업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야하나 이에 대한 납세홍보 등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다. 자료상에 대한 처벌수준 미약

(1) 경제법에 대한 검찰·법원의 처벌에 관대

현재는 검찰이 자료상의 특성상 증거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신병확보가 어려운 점 또는 경제범으로서의 초범인 점 등을 들어서 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 하거나 기소를 하더라도 법원 판결시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등의 가벼운 판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2) 실행위자를 밝히려는 노력 부족¹¹⁾

과세관청이 조세범칙조사시 실행위자를 밝히는 것이 세무조사의 주요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자 등이 도주한 상태인 점등을 들어서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하고 명의자만을 고발조치하여 범칙조사를 종결하는 등 그 실효성이 부족한편이다.¹²⁾

또한 검찰 등에서도 소재불명 및 업무폭주 등의 사유로 실제행위자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자만을 기소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 자료상 고발요건 미비

현행 세법상 자료상조사의 경우 자료상 추적조사시에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고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규정을 악용하여 자료상조사가 진행되면 가공세금계산서를 파기하여 없애거나, 최근에는 가공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아니하고 서로 전화로 세금계산서합계표만 작성하는 방법으로 자료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자료상 조사시에 세금계산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가공세금계산서 없이 세금계산서합계표만으로 검찰에 고발의뢰를 하면, 검찰에서는 증거서류 미비로 무혐의 처리를 하고 있다.

마. 세무행정 집행과정상 문제

(1) 사업자등록 관리업무의 취약성

과세관청의 납세자 편의위주의 간소화된 사업자등록절차와 제한적인 사전조사 그리고 사업자등록 현지 확인의 소홀등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관리업무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

즉, 사업자등록신청 건수의 일부만을 현지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은 서면으로 정상발급하거나 현지 확인을 하는 경우에도 사무실의 존재여부나, 본인 및 대리인의 면담만으로 자료상 혐의 여부나 위장여부 판단에 한계가 있다.

(2) 사업자등록후, 사후관리의 한계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상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전후로 자료상으로 돌변하는 경우나 미래에 자료상으로 변할 혐의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실태 파악이 극히 곤란한 점 등으로 사업자등록 이후의 사후관리에도 한계가 있다.

(3) 세적관리의 미흡

사실 자료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나 유통과정 문란 품목에 대한 세적관리가 절실히

11) 국세청, 『2022 국세통계연보(Ⅱ)』, 2022.12, p.508

12) 국세청, 『전계서』, p.509

필요하나, 행정력 부족으로 인하여 자료상 다발지역 등에 대한 지속적인 세적관리 등의 미흡으로 인하여 세적관리에 한계가 있다.

(4) 세금계산서분석표 등 전산출력자료의 활용 지연

현재는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및 세금계산서 분석표」를 세금계산서 발행일 이후 대개 5~6개월이 지난 시점에 가서야 과세과청이 검토하게 되어, 이 시점에는 자료상 행위자 등은 이미 도주한 상태가 대부분이다. 결국 실효성 있게 자료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자료상의 개선방안

가. 납세자카드 발급

현재 자료상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국세청에서 자료상을 조기에 찾아내지 못하고 자료상 행위 발생 이후 2~3년이 지난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그 기간중 자료상 행위자는 무능력자의 명의위장¹³⁾으로 자료상 행위를 한 후 무단으로 폐업하고 잠적을 감추는 등 실질적인 자료상 행위자는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납세자카드 발급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연계하면 자료상을 근절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납세자카드 발급제도’의 배경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신용사회로 접어들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갑 속에 카드 한 장 이상은 다 소지하고 있다. 우리가 소지하고 있는 카드를 보면 신용카드 외에 적립식 카드 등 다양한 종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만큼 현대사회에 있어서 일반인들은 카드 소지에 따른 거부감은 적은 반면 유용함은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대상황에 맞추어 국세청에서도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납세자카드’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민원인에게는 카드 소지만으로 각종 민원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간편함을, 국세청은 납세자에 대한 체계적인 세원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자료상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납세자카드 발급’의 방법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시 세무서는 사업자등록증의 발급과 함께 ‘납세자카드’와 전화선을 이용한 ‘카드체크기’ 또는 인터넷 PC를 이용한 ‘카드리더기¹⁴⁾’를 지급하고

13) 서희열, 『소비세제법』, 세학사, 2018, p.683.

14) 카드리더기 : FDD처럼 빈 슬롯에 해당 메모리를 삽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록 한다. 또한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자카드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우편이나 e-mail로 전송하거나 방송사 및 신문사 등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일정 기간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서와 함께 납세자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 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사실 그동안 ‘사업자등록증 검열제도¹⁵⁾’가 폐지된 이후 납세자의 사업장 변동 및 임대차계약 변경 등에 대한 확인이 납세자가 스스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관리가 힘들었으나, 기존 사업자에 대한 납세자카드 발급시에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서를 함께 받아 임대차내역의 변경 및 전화번호 변경 사항 등을 함께 확인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세원관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기존 사업자중 거주지가 지방에 있어 세무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납세자카드 발급을 신청토록 함으로써, 국세청에서는 이를 재차 확인한 후 납세자가 원하는 주소지로 배달증명이나 등기우편을 통해 납세자카드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납세자카드는 비록 신용카드와 같이 대금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나 납세자의 개인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으므로, 납세자카드 발급시 반드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정정신청시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수령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복사해 두어, 납세자가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3) ‘납세자카드’ 발급에 따른 기대효과

현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상업등기소에 법인설립 신고를 할 경우 법원에서는 법인등기부등본과 함께 법인카드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 법인카드의 사용용도는 ‘무인 민원서류 발급기’를 통하여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 외에는 큰 사용도가 없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납세자카드를 발급하고 이를 크게 확대 시행해 나간다면 납세자 및 국세청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법원에서 발급하는 법인카드에 비해 보다 많을 것으로 기대되며, 법인의 경우 향후 법인카드와 납세자카드를 연계할 수 있을 경우 납세자에게도 한층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도 큰 효용성이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납세자카드를 발급함에 따른 위장사업자 색출 측면 및 그 외의 측면에 대해서 기대효과를 서술하고자 한다.

15) 사업자등록증 검열제도는 구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사업자는 1년에 제1기, 제2기에 걸쳐 2회(나중에는 1년에 1회)씩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뒷면에 세무서장 직인을 찍어오던 제도이다.

(가) 세금계산서 발행 측면에서의 기대효과

1) 자료상혐의자 조기 색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료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자료상 행위자를 조기에 색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현재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상당히 정착되어 자료상 혐의자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듯이, 앞으로 납세자카드를 발급하고 이에 대한 시행이 확대될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시행과 같은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납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거래내역을 수동 세금계산서 대신 전화선을 이용한 카드체크기나 인터넷 PC를 이용한 카드리더기를 통해 납세자 카드에 의해 처리할 경우에는 납세자의 거래내역이 국세청 전상망에 실시간으로 넘어와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이전에 납세자의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자료상 혐의자를 조기에 색출할 수 있다.

2) 납세협력비용의 절감

또한, 현행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의로 신고기한 이후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등 변칙적인 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자료상의 출현을 초래케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납세자카드에 의해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될 경우에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성이 없어져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가 누락되는 경우도 없어 세금계산서 불부합 건수도 상당히 줄 것으로 기대되며, 위장거래¹⁶⁾·가공거래¹⁷⁾ 및 고의로 세무신고서를 중복 접수하는 경우 등이 획기적으로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나) 그 밖의 기대효과

1) 제 증명서 발급의 편리성

현재는 민원인이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여 제 증명을 발급받고 있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여 제 증명서를 발급받을시에 납세자가 홈택스서비스 가입 때 부여받은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분실할 경우 등에는 재차 세무서를 방문하여 비밀번호 등을 새로 부여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나, 납세자카드가 보편화 될 경우에는 각 세무서나 관공서 및 금융기관에 ‘민원 서류발급기’를 설치하여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제 증명서류를 간편하게 징취할 수 있어 민원인의 편의를

16) 위장거래란 실제 거래대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이다.

17) 가공거래란 실제로는 도매업자 또는 자료상으로부터 재화의 이동이 없었으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계산서)만을 수취하여가공원가와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경우의 거래를 말한다.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민원증명서 발급 업무에 따른 업무가 크게 줄어들어 이 업무에 종사하던 직원을 조사과 및 세원관리과로 배치시킬 수 있어 지금보다 효율적인 세원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다.

한편, 납세자에게 납세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금융기관 및 연금관리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에 카드리더기를 설치 할 경우에는 납세자카드에 의해 신청인의 체납사항 등을 확인할 수도 있어, 금융기관 등에서는 납세자에게 별도의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아도 되어서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2) 사업자등록 정정 업무 등의 간편성

현재 납세자가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임대보증금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서에 의해 변경사항을 세무관서에 정정 요청을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업자에게 납세자카드가 부여될 경우에는 납세자가 본인의 사업장 이전 사항이나 임대보증금 등의 변경 사항을 인터넷 PC를 이용한 카드리더기를 통하여 국세청에 통보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확인이 필요할 경우 사업장의 현지확인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도 있어 사업자의 세적관리가 원활히 이루어 질 것이다.

(4) 과세표준의 양성화에 따른 급격한 세 부담 증가에 대한 보완

(가) 개요

납세자카드 사용이 일반화·보편화 될 경우 모든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됨에 따라 납세자의 매출액이 대부분 노출되어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급격한 세 부담의 증가에 따른 납세자의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바 이를 해소할 방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급격한 세 부담의 증가에 따른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 세액공제 및 감면제도의 신설

국세청에서 일반사업자 및 근로소득자에게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함에 따라 음식점 및 소매점의 과세표준이 양성화되고 이에 따른 세 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완화하고자,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신용카드 매출액의 1%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이처럼 납세자카드 또한 이의 사용이 증가될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양성화되어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보완방법으로 신용카드세액공제 폭의 인상이나 새로운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를테면, 납세자카드로 거래내역을 확인할 경우 이 확인 금액중 세액부분에 대해 일정율의 세액을 공제하여 주거나 혹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하여 주는 제도를 마

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혜택이 주어질 경우에는 납세자의 과세표준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 시킬 수 있어 조세저항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적립식카드 형식을 통한 마일리지제도 이용

납세자카드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납세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항공사 및 주유소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적립식카드 형태를 취하여 납세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함으로써 이용을 크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V.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지난 1977년 7월 1일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제도가 시행된 이후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가 아직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현재 자료상 혐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각종 감사시 중점 점검항목으로 선정하여 자료상 자료처리에 역점을 두도록 행정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자료상 발생 추세는 <표 3>, <표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세무행정의 발전과 건전한 거래행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더 나아가 한단계 업그레이드(upgrade)된 경제행위가 정착되고 도덕성이 확보된 투명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암적존재인 자료상 행위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¹⁸⁾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 세무행정에서 고심해야 될 문제중 하나인 자료상 근절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예를 들면 납세자에 대한 홍보와 교육, 검찰과 경찰 등 자료상 적발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조세범처벌법』 등의 실효성 있는 개정 등이 요청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용사회로 접어들면서 국민들의 카드의 이용은 보편화 되고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납세자카드를 발급받고, 납세자는 거래내역을 세금계산서 대신 인터넷 PC를 이용한 카드리더기를 통해 납세자 카드에 의해 처리 할 경우에는 거래내역이 국세청 전산망에 실시간으로 넘어오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납세자는 관할 관청에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고, 국세청에서는 오류 및 누락자료가 현저히 줄어 자료상 혐의자를 조기에 색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의 증가, 카드리더기 설치 등에 따른 납세자의 비용부담, 개인정보 유출우려 등의 제약요건을 동시에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18) 전형수, 한국의 세무행정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석사학위 연구논문, 1995), pp.123—125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료상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그러나 자료상 행위는 상거래 관습, 그리고 경제주체들의 행태와 상당히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해결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카드제도의 도입을 통한 자료상 근절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사실 자료상행위는 세무행정의 발전을 크게 저해시키는 가장 큰 암적인 요인이므로 반드시 그 근절방안을 계속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정호. 2023. 『부가가치세 해설과 신고실무』, 씨에프오아카데미.
- 서희열. 2018. 『소비세제법』, 세학사.
- 서정화. 2024. “세금계산서 부실거래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제33권 제4호.
- 서정화 외 1인. 2019. “세무조사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세무회계연구.
- 송쌍중. 2006.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에서의 자료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2차 한일/일한 세무 Workshop 자료집.
- 안대희. 2015. 『조세형사법』, (주)도서출판 평안.
- 안창남 외. 2016. “세금계산서에 따른 조세범죄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제22권 제2호.
- 오기수. 2002.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 유재경. 2022. 『세무조사 대응전략』, 광교/광교이텍스.
- 이상돈. 2009. 『조세형법론』, 세창출판사.
- 전형수. 1995. “한국의 세무행정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세익. 1996. “포괄적 소득과 과세포착 소득과의 괴리현상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국세청. 2004. 긴급계시판 운영 및 처리 지침.
- _____. 2004. 자료상 연계분석 업무 처리 지침.
- _____. 2004. 2004년 부가가치세 조사관리 지침.
- _____. 2019. 2019년 10월 보도자료.
- _____. 2004. 지식관리시스템.
- _____. 통계연보, 각연도.
- _____. 자료상 근절을 위한 혐의자 분석 및 조사계획.
- _____. 2003. 자료상 근절을 위한 전국일체 세무조사 실시.
- 전자신문. 2001. 『전자세금계산서 확산될 듯』.

A Study on the Eradication Plan of Tax Invoice Trader

Suh Junghwa^{*}

〈Abstract〉

Even in difficult national economic conditions, the majority of business operators, such as those in cash-generating industries such as restaurants, and those in the construction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who avoid issuing tax invoices, are reluctant to standardize taxation and receive disguised or fabricated tax invoices from data for the purpose of reducing value-added tax. I'm doing it.

To date, the National Tax Service's data management is being carried out in the form of post-management. In many cases, problems arise from the data point of view and are confirmed when they are about to disappear. It is difficult to find the data, and even if found, it requires the person responsible for executing it. It is difficult to find and eradicate it, so there are many problems in terms of practical benefits.

In fact, even in industries where it is difficult to digest sales data and receive purchase data, or where sales are exposed due to the nature of the industry, tax invoices (or invoices) are issued to account for processing costs, and are inseparable from fraudulent refunds and fraudulent deductions. has.

One of the biggest reasons why data fraud is not eradicated at present is that the National Tax Service fails to find data fraud early and is often discovered only 2-3 years after the occurrence of the data crime. During that period, the data actor is in the name of an incompetent person. This is because the actor in the actual data does not suffer any damage, such as by disguising the data and then closing down the business without permission and disappearing.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introducing a 'taxpayer card issuance system' in the future and linking it with the current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will have a significant effect in eradicating data fraud.

Currently, as our country enters a credit society, people's use of credit cards is becoming more common. Therefore, when a taxpayer applies for business registration, a taxpayer card is issued along with a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and if the taxpayer processes transaction details using the taxpayer card through a card reader using an Internet PC instead of a tax invoice, the transaction details are recorded in real time on the National Tax Service's computer network. It will come to pass.

* Research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Yonsei University, suzukiyu81@yonsei.ac.kr, First Author

In this way, taxpayers will no longer need to submit tax invoice totals for each purchase and seller to the competent government office, and the National Tax Service will have a system that can detect suspects in the data at an early stage by significantly reducing errors and missing data.

In this study, we studied and presented a plan to eradicate data problem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taxpayer card system. In fact, data fraud is the biggest cancer factor that greatly hinders the development of tax administration, so we must continue to seek ways to eradicate it.

〈Key words〉 Data dealer, Tax invoice, taxpayer card, disguised/processed transaction, processing cost